

북한인권법 국회통과촉구 대회 자료집

북한 동포에게 인권의 빛을

일시 : 2005년 10월 14일 (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주최 : 여의도 연구소

공동주관 :

국제평화외교안보포럼, 길수가족구명운동본부, 남북자가족모임, 남북자가족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산하 북한인권소위원회, 두리하나선교회, 무지개재단,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북한인권국제연대, 북한인권기독교청년국제연합, 사학법인연합회, NK친구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6·25참전국군포로가족모임, 자유북한방송, 자유북한인후원회, 자유시민연대,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탈북자인권과정착을위한기도모임, 피난처, 피랍탈북인권연대, 한국탈북민정착지원협의회, 한민족인권수호대학생위원회(25개 단체, 가나다 순)
국회의원 김문수, 김영덕, 나경원, 전여옥, 최병국, 황우여, 황진하

북한인권법안

■북한주민의 인도적 지원 및 인권증진에 관한 법률안

(황진하의원 대표발의, 2005.6.27)

■북한인권법안 (김문수의원 대표발의, 2005.8.11)

○ 황진하의원 <북한주민의 인도적 지원 및 인권증진에 관한 법률안>

- ▲ 통일부장관 소속 북한주민·인권증진위원회 설치, ▲ 북한인권대사, ▲ 투명성 확보 등 대북 인도적 지원 기준 마련, ▲ 북한주민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 ▲ 탈북자,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등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노력 등을 규정함.
- 북한주민의 인권증진과 함께 인도적 지원 부분을 법안의 주요한 축으로 다루고 있음.

○ 김문수의원 <북한인권법안>

- ▲ 북한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분명히 하고, 헌법상 규정된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함,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 방송매체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노력 등 황진하의원 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원칙적이고 강경함.

○ 양 법안은 현재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며, 상임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조율될 것임.

북한인권 5대 분야 법안 제정의 당위성

제 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오늘 “북한 동포에게 인권의 빛을”이란 주제로 여의도연구소가 주최하는 <북한인권법 국회통과 촉구대회>에 참여하여 “북한인권 5대 분야 법의 의미와 당위성”에 관하여 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또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한민족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인권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휴전선 저편에 사는 북녘의 동포, 2천만 북한주민들은 이러한 인권의 수혜기회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인권의 빛, 생명의 빛이 없는 암흑과 질곡 속에서 김정일 위원장 1인을 떠받들며 그 한 사람만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래서 꿈도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이 오늘 북한주민의 삶입니다. 북한주민들의 이 같은 비극적인 삶을 더 이상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주민들에게 우리의 뜨거운 사랑과 진정한 동포애를 전달해야 합니다.

북한주민에 대한 참사랑의 길은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간답게 살도록 각성하게 만들고,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을 북한주민들도 같이 누리게 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체제와 이념의 차이를 뛰어넘어 북한주민들도 우리와 똑같이 인권의 빛을 쬐일 자격과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고귀한 가치를 갖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금일의 국제사회가 “인권에는 국경이 없다”는 보편성 원칙에 입각해 널리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3년간 계속된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 결의 채택, EU의 대북 인권대화 및 유엔총회 결의안 상정 추진을 비롯한 적극적인 북한인권 개선 노력, 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법 제정 동향 등에서 보듯이 세계시민사회(국제·국내 NGO들)와 인류의 양심은 더 이상 열악한 북한인권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안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외의 우수한 NGO들 사이에서는 다음의 4가지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인권은 종교, 인종, 정치체제, 이데올로기 등 어떠한 이유로도 양보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임을 거듭 확인하며, 생존권적 인권과 정치적 인권을 구분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려는 주장에 찬성하지 않는다.

둘째,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과 지원이 북한의 인권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지만, 경제협력을 위하여 북한인권문제에 침묵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셋째, 남북 긴장완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에는 동의하지만,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남북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넷째, 북한인권문제에 침묵하는 것은 분단을 고착시키는 길이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공조와 적극적인 노력만이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첩경임을 확인한다.

기이한 일은 최악의 인권탄압국 북한과 북한당국에 비굴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만이 소위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들어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애써 외면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대북화해·협력이란 이름 하에 무조건적 퍼주기성 지원과 협력, 그리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남북회담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에 기여하지 못하는 협력과 지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에 빠지게 됩니다. 인권 부재의 대북정책은 김정일 독재체제를 강고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북한주민들의 영혼을 질식시키고 생명을 파괴하게 만드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대북정책에 ‘인권’ 개념을 도입할 것을 주창하고자 합니다. 인권은 곧 북한주민의 ‘생명’이란 인식이 필요합니다. 북한주민을 살리는 대북정책을 추진할 때 역사와 민족 앞에 당당할 수 있으며, 또한 인류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수령의 유일적 영도가 지배하는 독재정권과 무조건적인 협력·지원을 하려는 정책, 북한주민들이 앞으로 독재자의 한낱 도구적 존재로 살아가도록 강요하는 정책은 인권탄압이라는 범죄행위를 묵인·고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일은 민족의 양심을 끝까지 잃지 않고 正道를 가려는

사람들, 북한주민의 인권을 걱정하면서 이들에게 인권의 빛을 전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그간 한나라당이 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북한인권 5대 분야 법안을 소개하고 조속한 입법의 당위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5대 북한인권분야라 함은 북한주민의 인권, 납북자, 국군포로, 탈북자, 이산가족의 5가지 분야를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10건의 법률안 내지 법률개정안이 발의·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건의 법률안을 열거하면, 첫째, 북한인권과 관련한 2건, 곧 ‘북한주민의 인도적 지원 및 인권증진에 관한 법률안’(황진하, 05.6.27)과 ‘북한인권법안’(김문수, 05.8.11), 둘째, 납북자와 관련한 3건, 곧 ‘납북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김문수, 05.6.24), ‘6·25전쟁납북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여옥, 2005.6.28), ‘귀환납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최병국, 2005.8.11), 셋째, 국군포로와 관련한 2건, 곧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문수, 05.6.23)과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황진하, 05.6.27), 넷째, 탈북자의 보호와 관련한 2건, 곧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문수, 04.9.24)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황우여, 04.12.6), 다섯째, 이산가족교류와 관련된 ‘남북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안’(김문수, 05.9.28)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상기 10개 법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북한인권법안’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주민은 우리의 동포이자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고, 각종 북한 인권현안에 대하여 국가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하고서는 진정한 통일을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북한인권법안은 북한인권 개선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이바

지하고 나아가 진정한 통일시대를 열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먼저 **황진하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출한 **‘북한주민의 인도적 지원 및 인권증진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통일부장관 소속 북한주민·인권증진위원회 설치, ▲북한인권대사, ▲투명성 확보 등 대북 인도적 지원 기준 마련, ▲북한주민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 ▲북한주민에 대한 정보전달·유통 방안 마련·시행,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북한인권 및 대북지원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 및 지원, ▲탈북자,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등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노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주민의 인권증진과 함께 인도적 지원 부분을 법안의 주요한 축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이 법안의 특징입니다.

김문수 의원이 제출한 **‘북한인권법안’**에서는 ▲북한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분명히 하고, 헌법상 규정된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함, ▲통일부장관 소속 북한인권개선위원회 설치, ▲북한인권대사, ▲북한인권정책자문을 위한 북한인권자문위원회 구성(통일부에 설치), ▲국군포로·납북자문제 해결을 위한 기획단 설치,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문제의 남북회담의제화,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통일교육에 북한인권교육 반영, ▲방송매체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노력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납북자 및 그 가족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25 전쟁 중 또는 종전 후 위협, 납치, 나포 등의 강제적 사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납북된 후 아직까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납북자의 송환문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시급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이 문제의 해결이 지지부진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납북자 송환 및 지원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납북자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 구성원이 납북된 후 납북자가족이 겪은 고통과 어려움에 대하여 국민보호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국가는 납북피해자에게 취업보호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납북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거나 보호받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 조사하고 희생 또는 불이익의 정도에 따라 보상 및 명예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가 됐습니다. 이에 국민화합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납북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안이 제출됐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의원이 제출한 ‘납북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 ▲ 대상 : 납북피해자 = 6·25전쟁 중, 후를 불문한 모든 납북자 및 그 가족
- 납북자본인 : 정착금, 주거지원
- 납북자가족 : 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보호, 교육지원, 의료급여, 생계급여
- ▲ 납북피해자의 피해 여부 조사, 명예회복 및 보상
- ▲ 장관급이상 남북회담에서 납북자 송환문제 반드시 의제화
- ▲ 납북피해자 지원위원회 설치(국무총리 소속하)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

다음 전여옥 의원이 제출한 ‘6.25전쟁납북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 ▲ 대상 : 6.25전쟁납북자 및 그 가족
- ▲ 취업보호, 생활지원금 지원, 기념사업 추진 및 명예회복, 납북자가족 단체 재정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병국 의원이 제출한 ‘귀환납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 ▲ 대상 : 6·25 종전 후 납북자 중, 국내 귀환한 자
- ▲ 정착금 지급, 주거지원, 직업훈련, 취업알선, 생업지원, 생활보호, 의료급여, 양로보호 등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김문수 의원안은 현재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계류 중이며, 나머지 두 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 중(정부는 납북자 가족에 대한 지원업무를 행자부를 주무부서로 하겠다는 방침임)에 있습니다.

셋째로, 국군포로 대우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한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국가차원의 예우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군포로는 국가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억류지에서 박해와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국군포로의 연령을 감안할 때 이들의 국내 송환은 존각을 다투는 사안이지만, 우리 정부는 수십 차례의 남북회담 중에 단 한번도 국군포로 문제를 의제로 삼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

한명의 국군포로도 송환하지 못했습니다. 억류지에서 출생한 포로의 가족 역시 진학과 취업에서의 차별대우 등 각종 인권침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국군포로의 실태 파악 및 송환을 위한 국가 책무를 규정하고, 국군포로의 가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자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의원이 제출한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국군포로대우 등에 관한 법률>은 살아서 돌아온 국군포로 본인에 대한 보상규정만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개정법률안에서는

- ▲ 국가의 책무 : 포로의 생존여부 등 실태 파악, 송환 정책 수립, 송환을 위한 외교적 노력 등
- ▲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 : 북한의 가족(탈북자 이상의 특별한 보호), 남한의 가족(보훈대상자로서 지원)
- ▲ 국군포로 송환 및 실태 파악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포로 송환 경비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황진하 의원이 제출한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 ▲ “국가는 포로의 대우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6·25전쟁으로 인한 국군포로 송환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장관급 이상의 남북한 당국자 회담에서 국군포로 송환 문제를 항상 의제로 설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넷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재외공관 등 체류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 물리적 행사 또는 위조 신분증 제시 등 불법적 수단을 이용하여 직접 진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이는 신변상의 상당한 위험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에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재외공관 등에 진입하는 방법 외에 서신·전화 등으로 보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이들이 처한 여러

가지 위험한 사정과 정보 부재 등을 감안하여 대리인에 의한 보호신청도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국내입국 등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할 책무를 규정함과 함께 매년 국내·외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의 보호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움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 ▲ 통일부장관은 매년 국내·외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이탈주민 보호방안을 강구·시행할 것과
- ▲ 해외 탈북자가 서신, 전화, 대리인에 의한 방법으로 보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신청은 직접 또는 대리인(재외북한이탈주민의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을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황우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 ▲ 강제송환 금지, 난민지위 인정, 국내입국, 임시보호시설 설치 등을 위한 외교적 노력 의무
- ▲ 국내·외 탈북자 실태조사 및 보호방안 강구
- ▲ 서신, 전화, 대리인에 의한 보호신청 인정
- ▲ 보호신청 즉시 임시보호 조치 실시
- ▲ 외국 체류 탈북자 중 보호신청을 한 자에 대한 현지에서의 보호·생계유지비용 지원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국내입국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 등을 새로이 명시하였습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이산가족교류촉진 관련 법안 1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에 진전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남북 이산가족간 생사확인이나 서신교환, 전화통화 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5년 8월 현재 남북 이산가족 중 정부에 상봉신청을 한 124,523명 중 68%가 70세 이상의

고령이며, 이중 21%인 26,167명은 이미 사망한 현실을 고려할 때,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문제는 시간과의 싸움이 된지 오래입니다.

남북한 당국은 남북 이산가족의 오랜 아픔을 조금이라도 달래기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적극 협의하여야 할 것이나, 상봉행사 등 남북 이산가족 교류 사업은 소수의 인원에 제한된 전시성 행사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북한 당국과의 적극적 협의 및 지원을 촉구하며, 아울러 남북 당국간 이산가족 문제의 획기적인 발전이 있기까지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김문수 의원이 ‘남북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 ▲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집행
- ▲ 국가는 각급 남북회담에서 남북 이산가족 교류 확대·지원 방안을 의제로 삼아야 함(안 제3조제3항).
- ▲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 지체 없는 국회 제출 및 매년 1회 진행경과 보고
- ▲ 통일부장관의 이산가족의 현황 및 교류 실태조사 의무
- ▲ 이산가족정보통합관리 체계 구축
- ▲ 이산가족 찾기 신청 시 6월 이내에 생사확인 및 소재과약 결과 통보
- ▲ 이산가족 교류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민간차원 이산가족 교류활동 촉진
- ▲ 이산가족 실태조사, 생사확인, 소재과약 등에 필요한 물자 또는 경비의 북한 지원
 - ▲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소요경비의 지원
 - ▲ 이산가족 교류주선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비의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10개 법안들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들, 즉 북한주민의 인권, 납북자, 국군포로, 탈북자 및 이산가족의 문제는 그 내용과 성격은 다를지라도

북한정권의 존재와 그 정권의 반인권성 혹은 인권탄압성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들 문제는 모두 ‘광의의 북한인권문제’라는 개념 속에 포섭될 수 있으며, 또한 남북분단의 결과물이라고 하겠습니까.

5대 북한인권법안은 현재 존재하는 북한인권(남북간 인권) 현안, 즉 북한주민의 인권, 납북피해자, 국군포로, 탈북자 및 이산가족의 문제들을 단순히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서, 또한 헌법상의 자국민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접근하고 해결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북한주민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그대로 방치되어선 안 된다는 점, 그리고 분단으로 인한 인간적 고통이 더 이상 지속돼선 안 된다는 분명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5대 분야 10건의 북한인권 관련 법안의 제출 및 입법노력은 7천만 겨레 속에 흐르는 진정한 인간애와 동포애의 발로이며, 또한 민족의 양심이 살아있음을 잘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인권에 침묵을 지키고 있는 정부와 달리 한나라당이 차별성을 가지고 북한인권 개선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조속한 시일 내에 결실을 거두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國軍捕虜待遇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01
----------	------

발의연월일 : 2005. 6. 23.

발 의 자 : 김문수·김기춘·김애실
김영숙·김재원·김정부
박계동·박성범·박세환
박승환·배일도·송영선
엄호성·이상배·이성권
이재오·정문헌·정의화
최구식·최병국·홍준표
의원(21인)

제안이유

조국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한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국가차원의 예우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군포로는 국가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억류지에서 박해와 고통을 받아왔음. 국군포로의 연령을 감안할 때 이들의 국내 송환은 존각을 다투는 사안이지만, 우리 정부는 수 십 차례의 남북회담 중에 단 한번도 국군포로 문제를 의제로 삼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 한명의 국군포로도 송환하지 못했음. 억류지에서 출생한 포로의 가족 역시

진학과 취업에서의 차별대우 등 각종 인권침해를 받아야 했음.

이에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을 위한 국가 책무를 규정하고, 국군포로의 가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군포로 실태파악 및 송환, 국군포로와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대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함양과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포로의 실태파악과 생존여부 및 그 송환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집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대북교섭 및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함(안 제3조제1항).

다. 재외공관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한다)은 국군포로가 억류지를 벗어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조치를 행하고 국내 송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안 제3조제2항).

라. 정부는 국군포로의 생사여부 등 중요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포로가족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함(안 제3

조제3항).

마. 국군포로 가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2 신설).

바. 국군포로 송환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의2 신설).

國軍捕虜待遇등에 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國軍捕虜待遇등에 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國軍捕虜待遇등에 관한法律”을 “국군포로 및 포로가족 대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군포로의 실태 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와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대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과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남한”이라 함은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을 말한다.
2. “북한”이라 함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을 말한다.
3. “국군포로”(이하 “포로”라 한다)라 함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적국(반국가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에 의하여 억류 중인 자

를 말한다.

4. “억류지 포로가족”이라 함은 포로가 억류지에서 형성한 가족관계에 의한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을 말한다.
5. “남한 포로가족”이라 함은 포로가 억류 전에 남한에서 형성한 가족관계에 의한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직계존비속을 말하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포로가족”이라 함은 “억류지 포로가족”과 “남한 포로가족”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국군포로의 송환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①국가는 포로의 생존여부 등 실태 파악 및 그 송환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집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북한 당국과의 교섭 및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재외공관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한다)은 국군포로가 억류지를 벗어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행하고 국내 송환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억류지에서 출생한 포로 가족의 송환을 위한

업무에 준용한다.

④정부는 국군포로의 생사여부 등 중요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포로가족(북한에 체류 중인 가족을 제외한다)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포로이었다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자(이하 “귀환포로”라 한다) 또는 남한에 입국한 억류지 포로가족으로서 이 법에 의한 대우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포로가족에 대한 지원) ①정부는 억류지 포로가족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호 및 지원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 등 추가적 보상과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남한 포로가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훈대상자로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6조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 및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단체에 대한 지원 등) 정부는 국군포로 송환 및 실태 파악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거나, 포로의 송환 등에 소요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국내 입국한 억류자 포로가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第1條(目的) 이 법은 국군포로(國軍捕虜)에 대하여 필요한 대우와 지원을 행함으로써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법은 국군포로의 실태 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와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대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과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第2條(定義) 이 법에서 "국군포로" (이하 "포로"라 한다)라 함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적국(敵國) [반국가단체(反國家團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무장폭도(武裝暴徒) 또는 반란집단(叛亂集團)에 의하여 억류(抑留) 중인 자를 말한다.</p>	<p>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남한”이라 함은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을 말한다. 2. “북한”이라 함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을 말한다. 3. “국군포로”(이하 “포로”라 한다)라 함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적국(반국가단체를 포함한다. 이

하 같다)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에 의하여 억류중인 자를 말한다.

4. “억류지 포로가족”이라 함은 포로가 억류지에서 형성한 가족관계에 의한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을 말한다.

5. “남한 포로가족”이라 함은 포로가 억류 전에 남한에서 형성한 가족관계에 의한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직계존비속을 말하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포로가족”이라 함은 “억류지 포로가족”과 “남한 포로가족”을 말한다.

第3條(基本政策의 수립) ①국가는 포로의 대우 및 지원(이하 "대우

제3조(국군포로의 송환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①국가는 포로의

등"이라 한다)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정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포로의 소재(所在) 및 현황

파악

2. 포로의 송환대책

3. 포로의 대우등에 관한 주요
시책

4. 억류지에서 출생한 포로의
직계비속의 지원에 관한 사항

생존여부 등 실태파악 및 그 송환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집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북한 당국과의 교섭 및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재외공관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한다)은 국군포로가 억류지를 벗어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행하고 국내 송환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억류지에서 출생한 포로 가족의 송환을 위한 업무에 준용한다.

④정부는 국군포로의 생사여부 등 중요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포로가족(북한에 체류 중인 가족을 제외한다)에게 지체

<p>第5條(登録申請등) ①포로이었다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자(이하 "귀환포로"라 한다)로서 이 법에 의한 대우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신설></p>	<p>없이 통보하여야 한다.</p> <p>第5條(登録申請등) ①포로이었다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자(이하 "귀환포로"라 한다) 또는 남한에 입국한 억류지 포로가족으로서 이 법에 의한 대우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2조의2(포로가족에 대한 지원)</p> <p>①정부는 억류지 포로가족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호 및 지원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 등 추가적 보상과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②정부는 남한 포로가족에 대해</p>
--	---

<p>第16條(時效) 제11조의 규정에 의 한 정착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 생한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 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 하여 소멸된다.</p> <p><신 설></p>	<p>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보훈대상자로서 지원을 하여 야 한다.</p> <p>第16條(時效) 제11조의 규정에 의 한 정착금 및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 ----- -----.</p> <p>제17조의2(단체에 대한 지원 등) 정부는 국군포로 송환 및 실태 파악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거나, 포로의 송환 등에 소요된 경비 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할 수 있다.</p>
---	---

國軍捕虜待遇등에 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황진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11
----------	------

발의연월일 : 2005. 6. 27.

발 의 자 : 황진하·유기준·이해봉·김용갑·김재원·정문
현·최구식·유승민·조성태·김영선·허
천·이강두·이계진·신상진·심재철·이혜
훈·안상수·한선교·박재완 의원(19
인)

제안이유

6. 25전쟁이 끝난 지 50여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국군포로가 아직까지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음.

더욱이 지난 2004년 12월 스스로의 힘으로 어렵게 북한으로부터 탈출하였으나 정부의 무성의와 무관심으로 인해 북한에 다시 강제 송환된 국군포로 한만택씨의 경우는 국가의 존재이유를 무색케 할 지경임.

2005년 1월 한만택씨 가족이 정부가 한만택씨에게 수여했던 화랑무공훈장을 반납하면서 느꼈을 심정을 헤아려야 함.

국가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운 이들을 위해 국가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국가가 최소한의 책무를 이행하고는 있는지를 보면 국군포로 본인은 물론 이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들로서는 울분을 느끼는 것이 당연함.

따라서, 한만택씨는 물론 국가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우다 북한에 억류중인 국군포로의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일 뿐만 아니라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고령화된 이들이 하루빨리 자유롭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국군포로 문제는 시점과 장소에 관계없이 모두가 중요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임에

도 불구하고 한만택씨의 경우처럼 북한 정권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인해 오히려 북한에 억류중인 6·25전쟁 국군포로 문제를 소극적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기에 이를 바로잡고자 북한에 억류중인 국군포로 송환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을 의무화 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가는 포로의 대우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6·25전쟁으로 인한 국군포로 송환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장관급 이상의 남북한 당국자 회담에서는 북한 지역에 억류중인 국군포로 송환문제를 항상 의제로 설정하여야 함(안 제3조의2 신설).

國軍捕虜待遇등에 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國軍捕虜待遇등에 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國軍捕虜待遇등에 관한法律”을 “국군포로대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국군포로의 송환) 국가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6·25전쟁으로 인한 국군포로 송환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장관급 이상의 남북한 당국자 회담에서는 북한 지역에 억류 중인 국군포로 송환문제를 항상 의제로 설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國軍捕虜待遇등에 관한法律</u></p> <p><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u>국군포로대우 등에 관한 법률</u></p> <p>제3조의2(국군포로의 송환) 국가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6·25전쟁으로 인한 국군포로 송환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장관급 이상의 남북한 당국자 회담에서는 북한 지역에 억류 중인 국군포로 송환문제를 항상 의제로 설정하여야 한다.</p>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안
(김문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24
----------	------

발의연월일 : 2005. 9. 28.

발 의 자 : 김문수·고경화·김애실
 김재원·김정권·김정부
 김정훈·박계동·박재완
 박순자·배일도·송영선
 신상진·안상수·엄호성
 유승민·윤건영·이재오
 임태희·전여옥·정희수
 주성영·최병국·홍준표
 황우여·황진하 의원
 (26인)

제안이유

남북 교류에 진척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남북 이산가족간 생사 확인이나 서신교환, 전화통화 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 2005년 8월 현재 남북 이산가족 중 정부에 상봉신청을 한 124,523명 중 68%가 70세 이상의 고령이며, 이중 21%인 26,167명은 이미 사망한 현실을 고려할 때,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문제는 시간과의 싸움이 되지 오래임.

남북 당국은 남북 이산가족의 오랜 아픔을 조금이라도 달래기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적극 협의하여야 할 것이나, 상봉행사 등 남북 이산가족 교류사업은 소수의 인원에 제한된 전시성 행사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북한당국과의 적극적 협의 및 지원을 촉구하며, 아울러 남북 당국간 이산가족 문제의 획기적인 발전이 있기까지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는 이산가족의 고통화를 감안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집행하여야 함(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나. 국가는 각급 남북회담에서 남북 이산가족 교류 확대·지원 방안을 의제로 삼아야 함(안 제3조제3항).

다. 통일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안 제4조제1항), 동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고 매년 1회 진행 경과를 보고하여야 함(안 제4조제3항).

라.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을 위하여 이산가족의 현황 및 교류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함(안 제5조제1항).

마.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효율적인

관리·이용을 위하여 이산가족정보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안 제5조제2항).

바.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1세대의 고령화를 감안하여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소재파악 사업이 전면적·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7조제1항).

사. 통일부장관은 이산가족 찾기 신청이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생사확인 및 소재파악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7조제2항).

아.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의 서신교환·전화통화, 상봉행사의 정례화 및 인원확대, 상봉 후 교류지속, 긴급가사방문, 이산가족 교류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민간차원 이산가족 교류활동 촉진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8조).

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생사확인, 소재파악 등에 필요한 물자 또는 경비를 북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차.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10조).

파.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주선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산의 고통을 완화하고 남북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남북 이산가족”이라 함은 이산의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으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친·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를 말한다.
2. “남북 이산가족 교류”라 함은 서신·전화·통신·방문·재회·재결합 등 방법을 불문하고 남북 이산가족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접촉 및 접촉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①국가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집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남북 이산가족의 고통화를 감안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확대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각급 남북회담에서 남북 이산가족 교류 확대·지원 방안을 의제로 삼아야 한다.

제4조(남북이산가족교류촉진기본계획) ①통일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남북 이산가족의 현황 등 실태조사 및 정보관리
2.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소재파악
3.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인원확대 및 정례화
4. 남북 이산가족 상봉 후 교류 지속을 위한 방안
5. 남북 이산가족간 서신교환·통신 등 교류수단의 확보 및 운용
6. 남북 이산가족 교류에 필요한 행정절차의 간소화
7. 민간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활동 지원
8.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을 위한 대북 협상
9. 남북 이산가족 1세대의 고령화에 따른 긴급 대책
10. 그 밖에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진행경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및 정보관리) ①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을 위하여 이산가족의 현황 및 교류 등에 관하여 실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효율적인 관리·이용을 위하여 이산가족정보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및 이산가족정보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이산가족 찾기 신청) ①남한의 이산가족이 북한의 가족을 찾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결과 이산가족으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이산가족 찾기 신청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그 밖에 이산가족 찾기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생사확인 및 소재파악) ①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의 고령화를 감안하여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소재파악 사업이 전면적·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생사확인 및 소재파악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남북이산가족교류촉진) ①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의 자유로운 서신교환 및 전화통화가 이루어지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북한 당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정례화 및 인원확대를 위하여 북한 당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이 상봉을 한 경우에도 추가적인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북한 당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통일부장관은 직계가족 및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위독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가사방문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통일부장관은 관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산가족 교류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야 한다.

⑥통일부장관은 민간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북한에 대한 지원) ①통일부장관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생사확인, 소재파악 등에 필요한 물자 또는 경비를 북한에 지원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을 할 때에는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남북이산가족민간교류경비지원) ①통일부장관은 이산가족 교류 촉진을 위하여 민간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남북이산가족민간교류경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

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등 유관단체에 남북이산가족민간교류경비 지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남북이산가족민간교류경비의 지급절차 및 금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이산가족교류추진단체) ①정부는 남북 이산가족 교류 등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이하 “교류추진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통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등 유관단체에 교류추진단체 지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교류추진단체에 대한 지원절차·자격·금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관계 부처의 협조)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부처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벌칙)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남북이산가족민간교류경비를 지급받은 때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교류주선단체 지원금을 받은 때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통일부에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한 자는 이 법 제6조제1항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